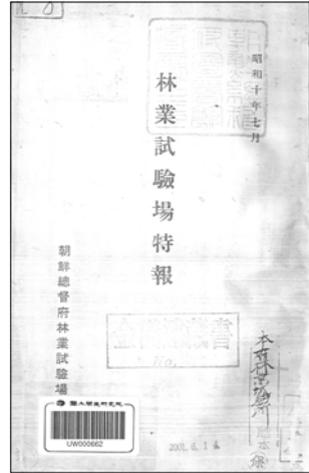


41 朝鮮治水治山史考 조선치수치산사고

1935년 / 德光宣之(도쿠미즈 노부유키) / 100면 / 10.30-07 덕14조 1935

이 책은 1935년에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에서 발행했다. 책의 내용 즉 주제가 「朝鮮治水治山史考」이고 원래 책의 표지는 「임업시험장 특보」로 되어 있다. 편저자는 조선총독부 촉탁인 德光宣之(도쿠미즈)이고 책의 부피는 101면이다. 내용인즉 고대(古代)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치산치수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다.



집록도서는 「三國史記(삼국사기)」를 비롯하여 「高麗史(고려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增補文獻備考(증보문헌비고)」, 「礪溪叢錄(반계수록)」, 「經世遺表(경세유표)」, 「牧民心書(목민심서)」, 「經國大典(경국대전)」, 「大典續錄(대전속록)」,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受教輯錄(수교집록)」, 「新補受教輯錄(신보수교집록)」, 「續大典(속대전)」, 「大典通編(대전통편)」, 「新增東國輿地勝覽(신증동국여지승람)」, 「慶尙道邑誌(경상도읍지)」, 「芝峰類說(지봉유설)」, 「耳溪集(이계집)」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책의 내용은 홍수 예방에 관한 일, 사방사업 화전민과 기타 일반 임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 수록된 내용은 총 180 항목에 가깝다. 일례를 들면, 조선조 초기의 특기할 만한 것은 속대전에서 볼 수 있는, 즉 일반 임야에 있어서의 개간은 기타경작의 경우 산허리(山腰) 이하로 제한하고 산허리 이상 지역의 개발은 이를 절대 금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조 후기(1778년)에는 ‘堤堰節目(제언절목)’을 만들어 한밭에 대한 대응책을 정하기도 했다. 즉 전국적인 한밭이 오면 왕은 목욕재계하고 밥반찬 가짓수를 줄여라, 그래도 비가 안오면 왕은 스스로 제관이 되어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라,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은 내실을 피하라고 하였다. 또한 이럴 때 일반 백성이 낚시를 한다거나 투망질을 할 경우 곤장 80에 북방국경지대로 추방한다. 또한 백성들이 제방에 호박을 심거나 소를 메어 뒀을 때도 곤장 80에 북방지방으로의 추방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이 ‘제언절목’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으로 절대왕권하에서 왕의 사생활에 속하는 내실을 피하라는 등의 규정을 보면 당시 한밭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정조(正祖) 6년(1782년)의 8도 제언(堤堰) 총수도 기록되어 있다.

정조 6년의 8도 제언

| 道別 | 제언(堤堰) 총수 |
|-----|-----------|
| 경기도 | 270 |
| 충청도 | 503 |
| 전라도 | 913 |
| 경상도 | 1,522 |
| 황해도 | 26 |
| 평안도 | 55 |
| 강원도 | 65 |
| 함경도 | 24 |
| 계 | 3,378 |